

# 성도(晟途)광과학상 포상 규정

2007년 12월 23일 제정  
2009년 2월 12일 개정  
2010년 1월 21일 개정  
2010년 11월 4일 개정  
2016년 1월 20일 개정  
2016년 12월 28일 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포상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본 학회 제 8 대 회장인 성도(晟途) 이종민 회원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포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상의 명칭은 성도(晟途)광과학상(Sungdo Optical Science Award)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한국광학회 회원으로서 광과학 분야에서 훌륭한 학술연구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제 4 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의 타천 또는 본 규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의 자천으로 이루어진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학회 사무국에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추천서 (서식 #1)
  - ② 최근 3년 이내에 발표한 심사 대상 논문 1편 및 내용 요약서(서식 #2)
  - ③ 이력서 (임의 서식)
  - ④ 연구 논문 및 학술 활동 실적 (임의 서식)
  - ⑤ 성도(晟途)광과학상 포상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임의 서식)

제 5 조 [심사 기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한국광학회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등) 및 광자공학 관련 국내·외 SCI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고, 광자공학 분야에 기여도가 큰 자를 우선적으로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 6 조 [위원회 구성] 본 학회 포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본상을 위한 포상심의 위원회

는 따로 구성한다.

제 7 조 [선정 방법]

1. 성도(晟途)광과학상 포상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후, 1인 또는 복수를 선정하여 포상위원회에 추천한다.
2. 포상위원회는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한 후, 상임이사회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3. 상임이사회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심의한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상임이사회가 적합한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포상 내용]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금메달(37.5그램)을 수여한다.

제 9 조 [시상 방법]

1.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제 10 조 [기금 관리] 본 상의 기금은 본 학회의 포상기금에 준하는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년 2월 12일)부터 유효하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0년 1월 21일)부터 유효하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0년 11월 4일)부터 유효하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1월 20일)부터 유효하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12월 28일)부터 유효하다.
7.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년 2월 15일)부터 유효하다.
8. [시행일] 이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8년 2월 7일)부터 유효하다.